

1. 제정이유

도심항공교통의 도입·확산, 활용·촉진 및 지원을 위해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768호, 23. 10. 24. 공포, 24. 4. 25. 시행) 및 하위법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, 원활한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구역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(안 제2조 및 별표)

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공역 및 전파·기상환경, 부지, 기반시설, 지역수용성, 접근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정하고, 각 분야별 세부사항을 별표로 규정함

나. 실증사업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(안 제3조)

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항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알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·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규 제정(안)

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,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) ①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심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확보되고, 도심형항공기의 이·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나 구조물이 없으며, 전파환경 및 기상조건 등이 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구역일 것
2.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에 필요한 이·착륙장, 장비의 구축 및 설치, 격납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, 부지사용 등에 대한 인·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활한 구역일 것
3. 실증사업구역 운영을 위한 도로·진입로, 전력·통신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일 것
4. 실증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일 것

5. 응급의료·소방 등의 비상대응이 가능한 구역일 것

6.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증사업의 목적 및 추진 계획에 부합할 것

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항목은 별표와 같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실증사업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)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지정 이후 해당구역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

제4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위한 검토항목(제2조제2항 관련)

1. 공역

- 가. 실증 면적, 최대고도, 항공기 운용반경 등을 고려한 공역의 크기
- 나. 비행금지·제한·위험구역 등 공역 규제 현황
- 다. 공역내 해상포함 여부 및 비행 영향 수준
- 라. 공역내 환경규제현황·보호문화재 현황, 인구밀집도 및 이착륙장 주변 장애물 등을 고려한 설정가능 항로

2. 전파·기상 환경

- 가. 연간 시정, 바람, 기후, 낙뢰 등 기상조건
- 나. 공역내 전파 사용현황 및 전파간섭 영향

3. 부지

- 가. 이착륙장 등 설치 가능 부지의 소유형태(국유지·공유지·사유지 등)
- 나. 비상착륙장(비상착륙시험용 및 비상시대체착륙지역) 대상지
- 다. 해당 토지 용도, 환경영향 및 시설·설비 구축 인허가 소요절차
- 라. 격납고 요구 면적 및 대상 부지
- 마. 이착륙장 요구 면적, 대상 부지 및 표면강도
- 바. 계류장 요구 면적, 대상 부지 및 표면강도
- 사. 소음측정 시험장 요구 면적, 대상 부지 및 소음측정 영향성

4. 기반시설

- 가. 전기시설 요구전력 및 전력 수급용량·설비
- 나. 도로·진입로, 통신 및 상하수도

5. 지역 수용성

- 가. 지자체 협조 의지 및 지역 수용성
- 나. 지자체의 소음 등 민원 해결 의지

6. 접근성

- 가. 비상시 사고대응을 위한 소방차량 등 접근성 및 대응 체계
- 나. 인근 소방대 대응 및 협조 수준